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정의하다

- 재가복지사업과 복지시설간의 유사정과 차이점 알아보기 -

글 : 조 영 표 _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복지시설이 계속 창출되고 있다.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만 해도 노숙인 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시니어클럽(노인인력지원기관), 자활후견기관, 자활지원센터 등등.

그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987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18년이 지나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개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명확하게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같이 유사한 명칭의 시설이 있어 더욱 개념상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재가복지사업과 각 복지시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사진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방이골노인주간보호센터 내부와 성북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진행 모습

1. 재가복지사업의 내용

재가복지사업은 1950년대 서구에서 시설 수용보호의 문제점 -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충족의 어려움, 비용 대비 효과,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을 개선하기 위해 탈시설화가 필요하고 탈시설화는 지역사회 보호라는 대안으로 귀결되며 발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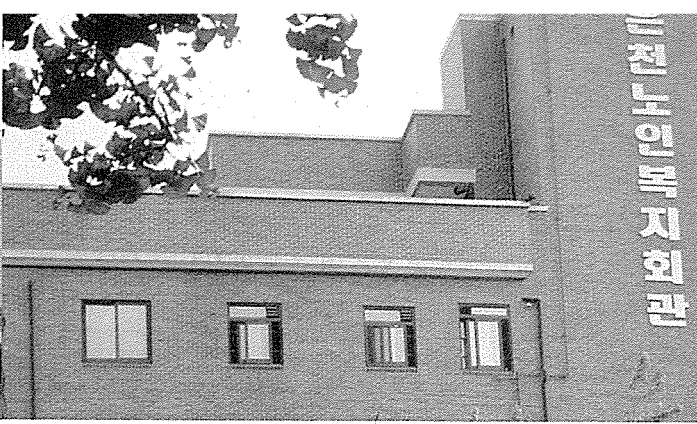
재가복지서비스(home care service)는 서비스의 범위나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좁은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가정방문서비스(in-home service)를 말한다. 둘째, 넓은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방문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내 이용시설이나 주거보호시설(residential home)에서 제공하는 제반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사회보호(communitary care)를 의미한다. 주거보호시설은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처럼 지역사회와 분리된 형태의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개방된 주거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그룹홈이나 집합주택과 같은 시설형태이다.

그렇다면 재가복지사업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일까?

첫째, 인간은 누구나 정상적인 환경인 자기 집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정상적인 생활의 장에서 물리적 및 사회적으로 재할시키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정상화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이다. 둘째, 가정에서의 생활은 신체적 및 사회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셋째, 가족 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가족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가족들의 클라이언트 학대 또는 유기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클라이언트의 가출 또는 시설입소를 예방 및 지연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재가보호가 시설보호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모두 시설복지사업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로 분류되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대상자이다.

재가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각 복지시설간의 차이점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재가복지사업이라는 유사함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

다. 이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현재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는 사업 내용 3가지만 기술했지만,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모두 10가지 서비스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 내용은 ①방문간병 및 수발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방문재활 ⑤주간보호 ⑥단기보호 ⑦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⑧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⑨그룹홈 ⑩요양서비스 제공계획(케어플랜) 작성지원이다. 

〈복지시설간의 차이점〉

구분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근거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가파)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
설치 유형	단독 건물	* 단독 건물 * 병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부설
시설 규모	연면적 1,000㎡(302평) 이상	100㎡(30.2평)이상	33㎡(10평) 이상
시설 기준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등	* 가파 : 사무실, 통신설비 * 주간, 단기 : 사무실, 거실, 식당, 욕실, 화장실, 동작훈련실	사무실
직원 배치기준	7인 이상	* 가파 : 4인 * 주간, 단기 : 5~7인 이상	3인
시설장 자격 이용대상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 60세 이상	사회복지사 3급이상 또는 의료인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및 실비보호대상자 ¹⁾ 로서 심신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	사회복지관장 겸직 수급권자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업 내용	상담, 취업알선, 가능회복훈련, 교양강좌 등	* 가파 :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상담, 우애서비스, 교육, 결연후원 * 주간, 단기 : 심신기능회복, 급식목욕, 취미, 오락, 운동, 상담, 교육	가파 사업 + 자립지원
명칭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재정 (운영보조금)	* 서울(시립) : 9억원 * 지방 : 가형 3.5억원 나형 3억원 다형 2.5억원	* 서울 : 8천만원 ~ 1.3억원 ²⁾ * 지방 : 주간 6,700만원 단기 7,400만원 가파 1억원	

주: 1) 실비보호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의 노인.

2) 서울의 경우 기본보조금, 종사자수당, 평가인센티브, 수급자지원비, 간병인비등으로 세분화되어 시설별로 예산의 차이가 있음.

자료참조 : 서울시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 [치매노인시설 안내집]